

2022 ICT융합 공정 및 제품 산업유공자 포상 시행 계획 (재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4차산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내 섬유패션산업에서의 ‘ICT융합 디지털 전환 대응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2022년도 ICT융합 공정 및 제품 산업유공자 포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유공자의 추천 혹은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절차에 따라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일
한국섬유수출입협회 회장

1. 목 적

섬유패션 4차 산업에서의 ICT융합 기술 활용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여 기업 경쟁력을 향상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 및 포상하여 국내 섬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포상 대상 및 규모

- ICT융합 기술 활용을 통해 섬유패션 산업 현장에서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개인)

구분	개수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4	• ICT융합 공정 및 제품 부문
협회장상	5	

※ 수상 후보자는 본인 혹은 추천인이 지명한 1인(개인)

※ ICT 융합 공정 및 제품이란 디지털 콘텐츠, VR/AR, 소재의 디지털화 등 섬유패션 전 공정상에 접목된 ICT 기술 및 활용을 의미

3. 신청기간

2022. 7. 1.(금) ~ 8. 5.(금) 15:00까지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내용
신청방법	공적조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원본)과 사본을 이메일(hyunzin@textra.or.kr)로 제출 ※ 신청 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신청서, 공적조서 등 양식교부	한국섬유수출입협회 홈페이지(www.textra.or.kr) 국내 의류·생활용 섬유소재 플랫폼(www.ktextile.net) 국내 첨단섬유소재 온라인 플랫폼(www.techtex.or.kr)
신청(계획)서 접수	2022. 7. 1.(월) ~ 8. 5.(금) 15:00까지 (5일 연장)
신청(계획)서 제출처	(0618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518, 섬유센터빌딩 2층 한국섬유수출입협회 연구개발본부 기업혁신지원팀 김현진 대리 (hyunzin@textra.or.kr) 우편(원본) 및 이메일(사본)로 송부

서류명	파일 형식	비고
신청서	.pdf	별지 1호
공적조서	.pdf	별지 2호
증빙서류	.pdf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자유양식)
사업자등록증	.pdf	수상 후보자가 속한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법인등록번호 포함)
재직 증명서 및 이력서	.pdf	수상 후보자 재직증명서 및 이력서 (자유양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pdf	별지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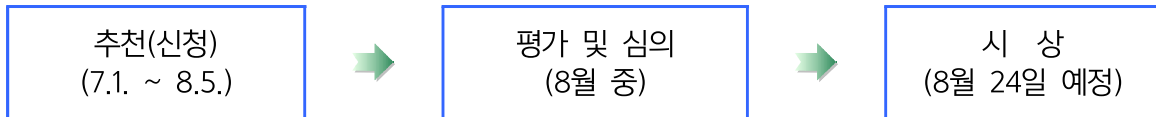
※ 제출된 신청서, 공적조서 및 첨부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장관 표창은 추천권자의 추천과 자체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공적평가심의 모두 외부 전문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심사로 함을 원칙으로 함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적조서 서면평가와 공적심의의뢰 절차를 거쳐 평점 상위부터 선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공적심사 평가기준

-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부합성(40),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30), 신분·공적의 훈격과의 합당성(20),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10)

□ 포상대상 제외(상훈법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 장관포상 처리지침 적용)

1)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포장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포장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포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받은 자와 단체는 2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단, 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 휴직증인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6.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섬유수출입협회 홈페이지(www.textra.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한국섬유수출입협회 기업혁신지원팀 김현진 대리
(☎ 02-6284-5012, hyunzin@textra.or.kr)

(별첨)

공적조서 작성요령

-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반드시 규정서식에 정확히 작성
- 관련 제출서류는 한글워드 A4 크기로 작성 후 원본을 인쇄하여 우편제출 및 파일 사본을 이메일로 함께 제출
- 공적조서 작성방법
 - 서체는 휴먼명조체 12포인트, 행간 160%이하, 가운데 아래 쪽 번호
 - 접수일 기준으로 해당 분야 공적을 개조식으로 작성
 - 구체적 수치는 자세히, 이전 포상실적은 높은 훈격부터 빠짐없이 기재
- 공적사항 기재방법(공적요지 충실히 작성)
 -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 사용 지양, 실적 등은 가능한 계량화
 - * (예시) ICT융합 제품 출시를 통해 매출액이 증가('19년 50억원→'20년 60억원)
 - 각 기준별 공적 내용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만 인정
- 공적사항 및 기타 관련문의는 한국섬유수출입협회 문의처에 확인

(별지 2호)

공 적 조 서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국 적	대한민국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		
직	업	소 속	
직	위	등급 (직급·계급)	근무기간
공적요지(50자 내외)			
추천경력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 천 관		(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해당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제재시작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종료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사유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공 적 사 항

1. 기업 내 ICT융합 기술 도입 및 작업 개요

공 적 사 항

2. ICT융합 기술을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 공적
(경제적 효과 등은 가능한 계량화)

공 적 사 항

3. ICT융합 기술을 통한 국내 섬유산업 경쟁력 제고에 대한 공적

(별지 3-1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제출서류에 아래와 같이 분류된 개인정보는 오직 2022 ICT융합 공정 및 제품 산업유공자 포상사무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구 분	수집 및 이용정보	이용목적
일반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등	2022 ICT융합 공정 및 제품 산업유공자 포상사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포상추천제한 대상자 여부 및 사유 확인

2. 개인정보는 제출일로부터 2022 ICT융합 공정 및 제품 산업유공자 포상 사무가 종료되는 날(당해 연도 연말 이내)까지 이용됩니다.
3.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포상추천이나 심사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 1항에서 4항까지의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2. . .

포상 후보자 : (인)

한국섬유수출입협회 회장 귀하

(별지 3-2호)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장관표창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0000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2.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